



프랑스의 2007년 성년보호제도개혁법률

정보신청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I. 서

프랑스에는 이미 취약한 성년자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1968년 1월 3일자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 법이 시대의 변화를 맞아 그 기능에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11년에 걸친 준비 작업 끝에 완성된 성년보호제도개혁에 관한 2007년 3월 5일자 법률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이 담고 있는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1) 관련인력의 전문화
- (2) 인적 능력이 실제로 약화된 자연인들에 대한 후견제도 개혁
- (3) 이해관계인의 능력 약화 정도에 따른 보호 조치의 비례화 및 개별화
- (4) 가족의 위상 제고
- (5) 언젠가 필요한 그 때에 자기의 이익을 보살펴줄 제삼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장래보호위임제도 신설

- (6) 개인별 사회지원조치 실시
- (7) 재판상 지원조치 신설

이하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성년보호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보호대상 성년자

1. 기존의 보호대상자

성년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성인의 제1범주는 정신적 능력 또는 신체가 현저히 악화되어 혼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신적 능력의 악화(alteration des facultés mentales)는 노령, 정신장애, 정신병질(구민법 제490조 제1항)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신체적 악화(alteration corporelle)는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비록 정신적으로는 온전할지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을 줄 수 있다(구민법 제490

조 제2항). 투옥된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형법 제29조). 보호를 요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상태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구민법 제490조 제3항).

제2범주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낭비벽(prodigalité), 무절제(intempérance), 무위태만(oisiveté) 등의 행태상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거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구민법 제488조 제3항).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지출로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무절제한 사람은 음주벽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을 복용하는 사람이다. 무위태만한 사람은 게으름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아서 생활비를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2. 신법의 개혁내용

신법에서는 기존과 같은 분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의사를 표시함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의학적으로 확인된 악화, 정신적 능력, 신체적 능력 등의 이유로 혼자서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한 모든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425조).

Ⅲ. 성년보호제도의 통칙

1. 다양한 조치들과 그 보호의 대상

성인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8년 1월 3

일자 법률이 신설한 다수의 조치들은 ① 임시조치로서의 司法保護(sauvegarde de justice), ② 보좌 및 자문으로서의 財産管理(curatelle), ③ 대리로서의 後見(tutelle)으로 대별할 수 있다.

2007년 3월 5일자 법률은 기존의 보호대상 성인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하면서, ① 장래보호위임(mandat de protection future), ② 개인별 사회보호조치(MASP: mesure d'accompagnement social personnalisé), ③ 재판상 보호조치(MAJ: mesure d'accompagnement judiciaire)와 같은 조치들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주로 인격(personne), 법률행위의 효력(validité des actes), 주거(logement), 재산(biens)이다.

(1) 인격의 보호

신법에서는 성년자들이 그들의 상황이 만드는 필요성에 의해 법에 규정된 대로 인격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다(법 제415조). 이 보호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장되고(동조 제2항), 보호받는 사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가능한 자율을 지향하며(동조 제3항), 가족과 공공단체가 그 의무의 주체이다(동조 제4항).

(2) 법률행위의 효력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온전해야 한다. 정신이 온전치 않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는 그 성년자가 행위시 정신이상의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414조의1). 무효소송은 해당 성년자

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사망시에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제외하고 ① 그 행위 자체가 정신이상을 증명하는 경우, ② 사법보호(sauvegarde de justice)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③ 사망 이전에 재산관리나 후견을 개시하기 위해 제소된 경우 또는 장래보호위임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한해 상속인에 의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민법 제414조의2).

(3) 주거의 보호

보호대상 성년자의 주거와 그 안에 설치된 가구는 본인이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보존되어야 한다(민법 제426조). 일시적 이용계약이 관리권자에 의해 체결될 수 있지만, 반환과 동시에 계약은 종료되고, 설사 그것이 기간을 정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종전에는 없었던 ‘별장(résidence secondaire)’에 대한 보호도 신설되었다. 성년자는 자유로이 생활공간을 결정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판사는 재산관리인에게 주거의 보장을 위한 숙박계약(convention d'hébergement)의 체결을 허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어떤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명단상의 의사의 사전통지가 있어야 한다. 주거에 관한 재판상의 결정에 앞서, 건강진단서의 존재를 요하며, 이 경우 주치의는 발급권자에서 제외된다. 당사자의 기념품, 특별히 개인적 성격을 지닌 물건, 환자의 치료용 물건은 본인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그가 유숙하는 시설에서 관리한다.

(4) 재산의 보호

개정민법에서는 보호조치의 담당자가 피보호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저축통장을 변경하거나 공공기금의 수령 자격이 있는 시설과의 관계에서 계좌 또는 저축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민법 제427조). 다만, 본인의 이익이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견판사나 가족회의가 허락할 수 있다. 또한 공탁소와의 관계에서 본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피보호자 본인의 수표발행이 금지된 경우, 보호조치 담당자가 판사의 허락을 얻어 자신의 서명으로, 본인이 명의자인 계좌를 운용하고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보호절차의 개시

(1) 청구권자(민법 제430조)

- ① 본인
- ② 배우자
- ③ 시민연대협약(PACS)의 당사자
- ④ 내연관계의 동거인
- ⑤ 친족 또는 인척
- ⑥ 긴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 ⑦ 본인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
- ⑧ (직권으로 또는 제삼자의 청구에 의해)검사

(2) 진단에 첨부(민법 제431호)

청구가 불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

가 작성한 명단상의 의사가 발급한 정밀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청구서 제출

청구서는 보호대상 성년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tribunal d'instance)에 제출한다. 장기입원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해 있는 병원의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4) 심리

판사는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이들은 변호인과 혹은 판사와의 합의 아래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판사는 사회적 조사(enquête sociale), 사실확인 조서작성, 주변인물에 대한 심문 등 소위 준비절차(mise en état)를 실시할 수 있다. 판사는 의사의 의견을 물어 공개변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5) 결정의 효과

보호결정은 그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효과가 있다.

3. 비용부담

우선 재판비용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사와 사회조사원의 보수는 피보호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만일 그가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다음으로,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

에 의해 선임된 수임인 이외의 보호조치 담당자들은 무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리재산의 중요성과 임무수행의 어려움에 따라, 판사나 가족회의에서 수당의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이 비용은 피보호자 본인의 부담이다. 보호조치가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재인(mandataire judiciaire)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비용은 사회부조가족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에서 정한 대로 보호대상 성년자 본인이 그 재력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단체가 데크레(décret)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부담한다. 장래보호수임인의 경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신법 제419조).

4. 보호조치 관계자

(1) 데파르트망 국가대표(représentant de l'État dans le département)

법원이 선임한 수임인에게 인가장을 부여하고, 그 활동을 감독한다. 위법하거나 피보호자에게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적발했을 시에는 직권으로 또는 지방검사장의 요청에 의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에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인가를 철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지방법원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① 데파르트망 국가대표에 의해 수임인에게 부

여되는 인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인가의 정지나 철회 또는 취소를 통보받는다.

- ② 관할구역 내의 보호조치에 대한 일반적 감시 임무를 담당한다.
- ③ 성년자 본인이나 가족 혹은 친족의 청구가 없을 경우에 직권으로 제소할 수 있다.
- ④ 후견판사와 같은 자격으로 보호대상 성년자를 방문할 수 있다.
- ⑤ 보호임무의 담당자를 불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3) 후견판사

- ① 직권으로 심리를 개시할 수는 없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개시한다.
- ② 서류를 심사한다.
- ③ 명령권을 행사하고 민사벌금(우리나라의 과태료에 해당)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통상의 인가를 발부하고, 후견의 예산을 결정한다.

(4) 법원서기장(greffier en chef)

확인과 감독 관련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 관련 계좌의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5) 보호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 ① 장래보호위임을 지정받은 수임인
- ② 배우자
- ③ 시민연대협약의 상대방 또는 내연의 동거인
- ④ 혈족, 인척 또는 피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긴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

- ⑤ 가족이나 주변인 중 누구도 재산관리나 후견을 맡을 수 없는 경우에 지정되는 법정관재인(mandataire judiciaire)

(6) 후견인의 기본의무 관련규정의 개정

신법에서는 기존의 재산목록 작성과 관련된 후견인의 의무에 관하여 작성기간을 10일에서 3개월로 늘리고, 피보호자 본인에게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며, 본인이 그 상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인격에 관한 조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새로 도입된 보호제도

1. 장래보호위임(mandat de protection future)

- (1) 피후견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자신 또는 그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장래 무능력한 상태가 될 때를 대비하여 그 시점에서 대표해줄 사람을 미리 선정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의 보좌를 받아서 장래보호위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위임은 공정증서(acte notarié)와 사서증서(acte sous seing privé) 두 형태로 체결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장래보호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신법 제477조).
- (2) 위임인에 의해 선정된 모든 자연인과 법정관재인 리스트에 올라있는 법인은 수임인이 될 수 있다(신법 제480조).

- (3) 피보호자가 능력을 회복하거나 사망한 경우,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지불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후견판사의 해임명령에 의해 이 위임은 종료된다(신법 제483조).

2. 개인별 사회지원조치(MASP: Mesure d'Accompagnement Social Personnalisé)

- (1) 사회보장수당을 받는 개인이 건강상 혹은 안전상 문제로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보장수당의 관리를 위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이해당사자와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사이에 체결되는 쌍무계약의 이행 형식으로 실시된다(사회부조가족법전 제271조의1).
- (2) 이 계약은 당사자의 자율적 자산관리능력을 회복하고 사회편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치의 수혜자는 데파르트망에 자신이 수령하는 사회보장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고 관리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은 주거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계약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이고 변경가능하다(사회부조가족법전 제271조의2).
- (3) 데파르트망은 이 조치의 시행을 다른 자치단체 또는 시의 사회복지센터나 비영리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사회부조가족법전 제271조의3).
- (4) 수혜자에게 분담금이 요구될 수 있다. 금

액은 법령의 한도 내에서 데파르트망의회의장(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이 결정한다(사회부조가족법전 제271조의4).

- (5) 개인이 약정하기를 거부하거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의회의장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사회보장수당에서 이체된다(사회부조가족법전 제271조의5).
- (6) 이 조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의장은 지방검사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사장은 후견판사에게 사법구호, 재산관리, 후견 또는 재판상지원조치의 결정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사회부조가족법전 제271조의6).

3. 재판상 지원조치(MAJ: Mesure d'Accompagnement Judiciaire)

- (1) 이 조치는 이해관계인의 자산관리능력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앞서 언급한 MASP가 위 목표달성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후견판사는 MAJ를 명할 수 있다. 혼인 중에 있는 개인에게는 배우자에 의한 사회보장수당관리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 조치를 하지 않는다(민법 제495조).
- (2) 이 조치는 종전의 사회보장수당후견(TP-SA: Tutelle aux Prestation Sociale)을 대체하는 것으로 재산관리나 후견과 병행할 수는 없다(민법 제495조의1).

- (3)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민법 제495조의2).
- (4) 사회부조가족법전 제471조의2에 규정된 명단에 등재된 법정관계인만이 이 조치의 담당자로 판사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민법 제495조의6).
- (5) 법정관계인이 피보호자 본인 명의 계좌로 사회보장수당을 수령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 의견과 가족상황을 고려하면서 관리한다(민법 제495조의7).

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후견조치는 5년을 한도로 하고 자동적으로 재심사된다. 또한 피후견인의 재산(특히 주택과 은행계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피후견인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후견인은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 피후견인은 허락을 얻어 생명보험 가입이나 유언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V. 후견제도의 수정

신법률은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견제도를 손질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피후견인은 후견신청에 관하여 법관에 의한 심사

오 승 규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